

# IMO 제100차 법률위원회(LEG)

##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100차 법률위원회  
(100th Session of Legal Committee)
- 기간/장소 : '13. 4. 15~4. 19(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KST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 II.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1]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
2. [의제 2] 선상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에 대한 보고 및 의료지원
3. [의제 3] 해적
4. [의제 4] 기타사항

##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1	해양사고 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
------	-------------------

- 상륙 및 육상시설 사용에 대한 선원의 권리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조치 마련(LEG 100/5, 이란)

### 가. 의제 개요

- 선원 상륙 및 육상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결의서 초안을 제안하는 문서임

### 나. 논의 경과

- 이란은 상륙 및 육상시설 접근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위원회(94차, 96차, 97차 및 98차)에 이슬람 선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IMO 차원의 조치를 강조함
- LEG 98/6에서 이란은 ISPS Code가 발효됨에 따라 선원 상륙과 관련하여 차별 및 불공정 대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 상륙과 관련한 다른 국제협약들의 불일치를 고려한 후에, 선원 상륙 및 육상의료시설 접근권한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함
- LEG 98차 위원회에서는 상기문제는 국제 해상교통간소화협약<sup>1)</sup>(Facilitation Convention 65)의 관련규정에 따라 FAL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선원 상륙과 관련한 문제는 FAL 37차에서 FAL 37/8<sup>2)</sup>, FAL 37/8/5<sup>3)</sup> 문서로

1)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cilitation Convention 65)

○ 채택/발효 : 1965.4.9. / 1967.3.5.

○ 목적 :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정박, 출항에 관한 요식행위, 수속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최소한 줄임으로써 해상교통을 간소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 및 6개의 결의서로 구성

2) FAL 37/8(육상 상륙 및 선박에 접근, 사무국)

○ 상륙 및 육상의료시설 접근 거부 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LEG의 조치사항들을 보고하는 문서

3) FAL 37/8/5(상륙에 대한 FAL 협약 개정 필요성, 이란)

○ 상륙에 대한 FAL 협약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란의 관찰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논의되었으며, 논의결과 차기 FAL 위원회 회의 시 FAL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다. 의제 내용**

-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달성된 결과가 없으며, 선원 상륙과 관련한 차별 및 불공정한 대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이란은 FAL 38차에 FAL 협약의 Standard 3.44(공익을 이유로, 선원 상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외국인 선원의 상륙을 인정해야 함)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협약의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이란에서는 상기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LEG 97차 및 98차에서 상륙과 관련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 LEG에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결의서를 개발 및 채택하여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동 문서에서 이란은 선원의 공정에 대우에 대한 IMO/ILO 특별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재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 정부에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서 초안의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상륙 및 육상시설 사용과 관련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결의서 초안 주요내용>**

- 회원국 정부에 아래 사항에 대해 촉구함
  1. 상륙 및 육상 시설과 관련한 선원의 기본 인적 권리에 주목할 것

2. 상륙 및 육상 시설과 관련하여 선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3. 관련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때 인적 요소, 선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 제공의 필요성 및 상륙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륙권 및 육상시설에서 거부된 모든 선원들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보호 제공을 보장할 것
5. 상륙 및 육상시설 사용 허가와 관련된 항만국의 불법, 비합리적, 부당한 조치, 태만으로부터 야기되어 선원이 입은 피해, 손해,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가질 것
6. 공공 및 기타 관련 당국이 선원 상륙의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선원, 선박의 선장 및 기국에게 서면으로 그들의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전달할 것
7. 상륙 허가 시 담당관들에 의한 차별 및 불공정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적절한 제재 규약을 제공할 것

**라. 논의내용 및 결과**

- 선원의 상륙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법률 위원회의 작업의제가 아님에 따라 동 사안은 FAL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결정하였으며, 결의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 선원의 인권적인 측면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으며, 이란은 올해 제28차 총회에 동 결의서 초안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

**마. 향후계획**

- 동 의제에 대한 논의는 FAL 통신작업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아국은 동 통신작업반에 적절한 참여가 필요

의제 2	선상 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지원
------	---

- 선상 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한 지침 초안(LEG 100/7, 영국)

가. 의제 개요

- MSC.1/Circ.1404(해적 및 무장강도와 관련한 범죄조사의 원조를 위한 지침)를 바탕으로, 영국은 선상 범죄, 선상 실종 및 희생자 보호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개발하여 동 위원회에 제출함

나. 논의 경과

- 제27차 총회에서 바하마, 필리핀, U.K, U.S는 선상 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에 관한 지침과 희생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지침의 개발을 제안하는 문서(A27/10/1)를 제출하였으며, 동 문서에 대한 논의 결과로 총회 결의서 A.1058(27)이 채택됨
- 총회 결의서 A.1058(27)에서는 법률위원회가 범죄현장의 보존, 희생자의 보호 등의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회원국 및 당사자들이 관련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LEG 99에서, 영국은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지침의 개발을 법률위원회의 현 2개년(2012~2013)의 새로운

작업의제(unplanned output)로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며, MSC.1/Circ.1404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침 초안을 LEG 99/INF.2로 제공했음

- LEG 99에서는 동 작업의제의 추가에 동의 및 LEG100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 관심있는 회원국 및 당사자들은 LEG 100에 문서 제출 및 관련 전문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함
- LEG 99이후, 영국은 비공식 사전 논의를 통해 공동제출국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LEG 99/INF.2를 보완한 '선상 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지침 초안'을 동 문서의 부속서에 첨부

다. 의제 내용

- LEG 99에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음
  - 동 지침은 각 국 법적 시스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활용성 및 상식적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함. 특히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에 초점을 뒀야 함
  - 여객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되어야 함
  - 선장이나 선원은 증거의 수집 분석 보존 작업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동 지침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안됨
  - 1개 이상 국가의 사법권이 경합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함
  - 용의자의 인권보호도 고려되어야 함
  - 선장 또는 선원의 미숙함으로 증거 수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동 지침이

-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됨
- 비공식 사전 논의에서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번 제100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 일부 연안국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국법이 존재함. 다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범죄의 해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동 지침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을 승객 또는 선원으로서 승선 금지를 시키는 내용을 동 지침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선장은 잠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압수할 권한 또는 법집행기관에 초기 연락 없이 심문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동 지침에 범죄의 종류를 나열해야 하는지 여부. 부록 4에 중범죄<sup>4)</sup>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 중범죄들은 오직 법정에서만 범죄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결될 수 있음. 대신, “선장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법집행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형식과 같이 정의를 앞부분에 삽입할 수도 있음
    - 선장은 자신 또는 본선선원이 증거 보존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동 지침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선상 중대 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 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보호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지침 초안
    - 동 초안에서는 지침의 개발 경위에 대한 소개, 이해당사국 및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 및 조정, 선장의 역할, 혐의에 대한 조치, 기국에의 통보, 희생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 지원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희생자 진술서, 피의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등에 대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라. 논의내용 및 결과

- 본회의에서는 회기간 작업반에서 요청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으며, 아국은 선장의 권한 및 면책범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함
- 1.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내법(연안국의 사법권)에 대한 인정 여부
  - 사법권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며, 지침서는 사법권과 같은 법적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거보존에 대해 중점을 뒤야 한다고 논의함
  - 지침서는 UNCLOS(유엔해양법협약)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법권을 가진 이해당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논의함
- 2.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승선 금지 여부
  - 지침서는 증거보존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뒤야 하며, 인권 문제를 들어 동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함
- 3. 선장의 증거 압수권한 및 심문에 관한 권한 존재 여부
  - 선장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최소한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논의함

4) 살인, 과실치사, 변사, 납치, 어린이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학대, 방화, 강간, 성추행, 중상해죄, 강도, 미화 \$10,000 초과 절도 및 해적

- 증거보존을 위해 선장은 증거를 압수할 권한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기국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4. 중대범죄 종류 목록화 필요 여부
  - 중대범죄를 정의하고 목록화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지침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동의함
- 5. 선장이 증거보존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 여부
  - 선장은 전문적인 사고 조사 및 증거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지침서에 따라 증거보존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책임이 없음을 논의함
- 영국이 제안한 선상범죄, 선상실종 보고 후 증거수집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한 지침서 검토를 위한 작업반(WG1) 개설함
- 금번 작업반에서는 법적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다루지 않았으며, 작업반 회의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권의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과자 승선 금지에 대한 결의서 전문 조항 삭제
  2. 지침서의 목적이 형사재판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3. 지침서에 언급된 IMO 사고조사코드는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 삭제
  4. 선장은 전문조사관 및 법집행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 지침서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
  5. 중대범죄를 구체적으로 식별한 부록 4를 삭제하고, 대신 지침서 초안에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내용 추가

6. 지침서 추가 검토를 위한 회기간 작업반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동 작업반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
- 작업반 논의사항에 대해 본회의장에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작업반에서 검토한 지침서에 대해 승인함
- 위원회는 지침서 초안의 채택을 위해 제28차 총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필요한 문서편집 작업은 사무국에서 하기로 함

#### <지침서 주요 내용>

##### 서 문

- 지침서의 목적은 선장<sup>5)</sup>이 법집행관 및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증거수집 및 보존과 의료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선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둠
-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므로 법집행관 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하며, 동 지침서를 선장 책임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됨

#####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

- 선박 항해 시 관련된 많은 법적 관할권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를 식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일반적으로 선장은 진술 및 발견된 중대범죄<sup>6)</sup>를 기국 및 관련 국가에 보고할 것

5) 선장은 선장이 대리한 사관 및 선원을 포함하는 개념

6) 지침서에는 중대범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의문사, 실종, 심각한 상해를 입힌 범죄, 성폭력, 선박안전의 위험 및 상당한 금전 손실 등을 중대범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언급

- 관련 국가 및 단체 간 협력
  - 기국 및 관련 국가는 범죄 조사 착수, 진행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
- 선장의 역할
  - 선장은 선박에서 중대범죄의 진술을 확보 하였을 때, 기국 및 관련 국가에 가능한 빨리 보고할 것
  -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며, 선종에 따라 증거수집 및 보존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인정
  - 선장은 피해자 보호, 증거 보존 및 관련 당국의 지시를 받을 것
  - 선장은 범죄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할 것
- 실종자
  - 실종자 발생 시 즉시 수색 작업을 하여야 하며,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선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 국제항공 및 해양 수색구조편람을 참고 하여 적절한 수색구조 기구에 보고할 것
  - 선장이 범죄행위로 인한 실종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지침서를 따를 것
- 보호 및 의료지원
  -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살 및 자해자에 대해 선장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 자살 및 자해시도자들의 하선이 결정됐을 경우, 선장은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 등에 협력할 것
  - 자살 및 자해위험이 중대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선장은 지침서의 적용되는 규정을

참조할 것

마. 향후 계획

- 지침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실종,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해 선장이 취해야 할 방침을 담고 있으며, 제28차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회의결과 및 지침서의 내용을 법무부, 외교부,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운 선사 등 관련 부처 및 업·단체에 전파할 것

의제 3	해적
------	----

해적 (LEG 100/6, UNICRI)

가. 의제 개요

-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수집,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UN 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의 보고서임

나. 의제 내용

- 사무국은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수집,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UNICRI를 통해 시행중인 바, IMO 제99차 법률위에서는 각국의 관련 판결이 IMO 법률위원회 또는 UNICRI에 제공될 것을 촉구함
  - UNICRI는 2013.2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법원 판결의 스캔본 등 해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임
- UNICRI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해적의 나이, 가족, 거주지, 직업, 해적 행위 양태,

체보, 기소, 재판, 재판 후 이송 결정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 100차 법률위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소개함

- UNICRI는 2013. 3. 26 로마에서 ‘사설무장 보안요원(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활용 관련 가이드 라인’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3. 4. 10~11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회의 시 보고서를 제출함
- UNICRI는 회원국들의 우려사항, 즉, 회원국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소말리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해적 관련 정보 수집, 재판 후 이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에 대해 답변을 제공할 예정임

#### 다. 논의내용 및 결과

- UN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는 사무국과 협조하여 각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바, 2013. 2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함
  -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 등 국가들이 판결을 공개하고 있는 바, 전 세계의 판결이 UNICRI에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함
  - UNICRI는 해적의 나이, 해적이 자주 출몰 하는 지역, 직업, 해적 행위 양태, 체포, 기소, 재판, 재판 후 이송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로 분석하고 있는 바, 해적 행위의 예측 및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라. 향후계획

- 아국의 소말리아 해적 관련 판결을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함

의제 4	기타사항
------	------

- ① 연안 석유 탐사 및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월경성 유류오염피해에 관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논의 (LEG 100/13, 인도네시아)

#### 가. 의제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연안 석유 탐사 및 개발로 인한 월경성 유류오염피해의 책임 및 보상 체제 관련 국제회의 결과, 오염피해 책임 및 보상 체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원칙들이 존재함. 다만 그런 원칙들은 기존의 국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며, 향후 더욱 논의가 필요함

#### 나. 의제 내용

- 동 의제와 관련하여 상기의 원칙들은 오염 피해 방지 및 오염 피해 배상금 회수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Principles to prevent pollution damage)은;
  - 인공섬 및 ancillary units을 포함한 모든 오프쇼어 시설(offshore facilities)에 적용되어야 함
  - 당사국 관할권내에서 오프쇼어상의 적절한 안전조치의 시행을 요구해야 함
  - 오프쇼어 시설이 적절한 비상계획의 비치를 요구해야 함
  - 당사국들이 월경 또는 월경될 수도 있는

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을 하도록  
요구해야 함

- 오염피해 배상금 회수의 용이성을 위한 원칙  
(Principles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compensation)은;
  - 기존의 국제해사사법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자국 법원이 오염 피해로 발생한 배상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오염 피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오프쇼어 시설에 의한 모든 기름 오염 및 오프  
쇼어 소유자의 예방 조치 비용, 기름 제거  
비용 및/또는 개선 조치 비용을 다뤄야 함
  - 당사국이 천연자원에 발생한 피해와 관련  
하여 오프쇼어 시설 소유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해진 한도까지 오프쇼어 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함(예외조항  
명시도 필요)
  - 오프쇼어 시설 소유자가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다. 논의내용 및 결과**

- 동 문서에서 제안된 원칙들을 법률위원회  
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회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기로 함
- 다만, 양자/지역 협정에 관심 있는 회원국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향후 동 사안을 다루  
기로 함

**라. 향후계획**

- 인도네시아는 동 사안에 대한 회기간 작업  
반을 구성할 예정이므로, 아국은 필요시  
이에 대해 대응할 것

- 아국은 양자/지역 협정 또는 국제협약으로  
논의할 필요성 분석과 관련하여 외교부,  
법무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유관부처와  
논의할 필요
  - 선박연료유협약 및 난파물제거협약 적용  
사례 참고

**② IMO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에 대한 조언 및 지도 : 92 CLC  
협약 이행에 대한 조언(LEG 100/13/1, IOPC  
펀드)**

**가. 의제 개요**

- 92 CLC 협약에 의거 발급된 보험증서,  
블루카드와 협약증서 간 불일치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92 Fund 사무국에  
서 조언을 요청함

**나. 논의 경과**

- 2012년 3월 5일 유조선 ALFA I호가 그리스  
Piraeus 인근 Elefsis Bay를 횡단하던 중  
수중 물체(난파선 City of Myconos호로  
추정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선저부분에  
30미터 가량 파공이 발생, 우현으로 기울어  
지면서 침몰하였으며, 동 사고로 선장이  
사망함
- 침몰 후,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Elefsis Bay의 해안선을 따라 13km의  
해면을 오염시키고 접근하기 힘든 바위해변  
및 해군기지에 영향을 줌
- 방제업체에서 14.4백만 유로에 이르는 방제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함. 선주 보험사인  
Aigaion는 IOPC Fund에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을 구함



**다. 의제 내용**

- 유조선 ALFA I호는 오염손해를 포함하여 P&I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보험조건은 그리스 영해 내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200만유로의 손해를 배상하고 화물은 비지속성유류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시하였으나, Blue card에는 92 CLC 협약의 이행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발행됨
- Blue Card를 기초로, 그리스정부는 92 CLC 협약에 따라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발행하였음. 동 선박(1,648GT)은 92 CLC 협약 상 4.51백만 SDR(5.53백만 유로)의 책임제한액이 적용되며, 92 Fund 포함 최대 보상한도액은 203백만 SDR(248.9백만 유로)임. 만약 선주가 재정적으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보험이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손해를 입은 자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1992 Fund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 보험증서에는 2백만 유로 책임한도 및 비지속성 유류 운송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그리스 당국에 제출된 블루카드에는 92 CLC 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증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을 주목함. IOPC Fund 이사회는 Blue Card를 발행한 보험사를 상대로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 CLC 협약증서를 발행하는 체약국이 보험사가 제출한 Blue Card에서 제공하는 내용, 조건, 범위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와 불충분한 보험 범위의 결과로 Fund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면 체약국이 Fund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조언 및 검토가 요청됨

**라. 논의내용 및 결과**

- 협약증서를 발급하는 주관청이 블루카드와 보험계약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주관청의 보상에 대한 책임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마. 향후계획**

- 동 사안 관련, 아국은 법무부, K P&I, 해상보험회사 등 관련기관과 검토 및 아국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선박연료유협약 및 아테네 의정서의 협약 증서 발급절차 참조